KOSHA GUIDE A - 189 - 2021

일산화탄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·분석 기술지침

2021. 5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
- 제·개정 경과
- 2021년 5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,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(NMAM®), 5th ed, www.cdc.gov/niosh/nmam
-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(U.S.A),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, www.osha.gov/dts/sltc/methods/index.html
- Health and Safety Executive (U.K.),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(MDHS) guidance, www.hse.gov.uk/pubns/mdhs/
-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(ACGIH):
 Documentation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
 Indices, 2021.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4호(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8호(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5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일산화탄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·분석 기술지침 제안개요

I. 제정이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.

Ⅱ. 제정(안)의 주요내용

- 1. 일산화탄소의 물리화학적 특징
- 2. 일산화탄소의 국내외 노출기준
- 3. 일산화탄소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방법

Ⅲ. 관련 법규 및 규격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

Ⅳ. 제정위원회 심의개요

- 제 안 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

- 심 의 일 : 2021년 5월 17일 ~ 5월 20일(서면 심의)

- 심의위원 : 재적위원 15명 중 12명 찬성

- 주요 수정내용 : 일산화탄소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

일산화탄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·분석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일산화탄소의 측정,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밀폐"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 상태에서 고형(固形)의 이물(異物)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를 말한다.
 - (나) "밀봉"이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 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.
 - (다) 중량을 "정확하게 단다."라 함은 지시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.
 - (라) "약"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± 10%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.
 - (마) 시험조작 중 "즉시"라는 용어는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바) "검출한계"라 함은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나 양을 의미한다.

- (사) "정량한계"라 함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정량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가장 최소의 양으로, 단지 검출이 아니라 정밀도를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3배 수준을 의미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4호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- (1) 이 시험법에 필요한 어원, 분자식 및 화학명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() 내에 기재한다.
- (2) 원자량은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협회(IUPAC)에서 제정한 원자량 표에 따른다. 분자량은 소수점 이하 제 2단위까지 하고 제 3단위에서 반올림한다.
- (3) 이 시험법에 규정한 방법이 분석화학적으로 반드시 최고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이라도 동등 이상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- (4) 이 시험방법에 표시한 사항 중 탈착효율, 검출한계 등은 각조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을 참고하도록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 값이 분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(5) 시료의 시험, 바탕시험 및 표준액에 대한 일련의 동일시험을 행할 때 사용하는 시약 또는 시액은 동일 롯트(LOT)로 조제된 것을 사용한다.
- (6) 이 시험법에 사용하는 수치의 맺음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의 규격 KS Q 5002(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)에 따른다.

- (7) 이 시험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학적 상식에 따르되 이 시험법에 기재한 방법 중 세부조작은 시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자가 적당히 변경 조절할 수 있다.
- (8) 단위 및 기호 : 길이, 넓이, 부피, 농도, 압력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.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위는 KS A ISO 80000-1(양및 단위-제1부: 일반사항)에 따른다.

종류	단위	기호	종류	단위	기호
길이	미터	m	농도	몰농도	M
	센티미터	cm		노르말농도	N
	밀리미터	mm		밀리그램/리터	mg/L
	마이크로미터	μm		마이크로그램/밀리리터	μg/mL
	나노미터	nm		퍼센트	%
압력	기압	atm		세제곱미터	m³
	수은주밀리미터	mmHg	부피	세제곱센티미터	Cm³
	수주밀리미터	mmH ₂ O		세제곱밀리미터	mm³
넓이	제곱미터	m²		킬로그램	kg
	세급 비디 제곱센티미터		ㅁ쾨	그램	g
		Cm²	무게	밀리그램	mg
	제곱밀리미터	mm²		마이크로그램	μg
용량	리터	L			
	밀리리터	mL			
	마이크로리터	μL			

(9) 온도

- (가)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(Celcius) 법에 따라 아라비아숫자 오른쪽에 ℃를 붙인다. 절대온도는 K로 표시하고 절대온도 0 K는 -273℃로 한다.
- (나) 상온은 $15\sim25$ °C, 실온은 $1\sim35$ °C, 미온은 $30\sim40$ °C로 한다.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°C 이하의 곳을 뜻한다.

(10) 농도

- (가)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 또는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을 표시할 때에는 중량/부피(w/v)%의 기호를 사용한다.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,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부피/부피(v/v)%의 기호를 사용한다. 백만분의 용량비를 표시할 때는 ppm(parts per million)의 기호를 사용한다.
- (나) 공기 중의 농도를 mg/m³으로 표시했을 때의 m³은 정상상태(NTP,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: 25℃, 1기압)의 기체용적을 뜻한다. 따라서 노출 기준과 비교 시는 작업환경 측정 시의 온도와 압력을 실측하여 정상상태의 농도로 환산하여야 한다.

(11) 시약, 표준물질

- (가)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화학용 시약에 규정된 일급 이 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은 제조회사에서 표시하는 농도 함량을 따른다.
- (나) 광도법, 전기화학적분석법, 크로마토그래피법,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쓰이는 시약은 특히 순도에 주의해야 하고,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함유할 염려가 있을 때는 미리 검정하여야 한다.
- (다) 분석에 사용하는 지시약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M 0015(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방법)에 규정된 지시약을 사용한다.
- (라)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시약을 사용하며, 표준용액을 조제하기 위한 표준용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절히 보관되어 오염 및 변질이 안 된 상태로 보존된 것을 사용한다.
- (12) 측정·분석 방법에 사용하는 초순수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온교환수지로 정제한 탈염수(脫鹽水)를 말한다.

(13) 기구

(가) 계량기구 중 측정값을 분석결과의 계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(나) 중량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^{-5} g(0.01 mg)까지 달수 있어야 하며, 화학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^{-4} g(0.1 mg)까지 달 수 있어야 하며, 국가검정을 필한 제 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.
- (다) 이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리 기구는 KS L 2302(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)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 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여과용 기구 및 기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"여과한다."라고 하는 것은 KS M 7602(거름종이(화학 분석용)) 거름종이 5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.

5.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

(1) 시료채취 기구 및 측정방법의 선택

시료채취의 목적과 시료채취시간, 방해인자, 예상되는 오염농도 및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료채취기구 및 분석방법을 선택한다.



일산화탄소(Carbon Monoxide)

분자식: CO 화학식: CO 분자량: 28.01 CAS No.: 630-08-0

녹는점: -205℃ 끓는점: -191.5℃ 비 중: 0.967 용해도: 27.6 mg/L(25℃)

특징, 발생원 및 용도: ■ 상온에서 무색, 무취의 가스 상태로 존재

• 연료나 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며 인체 내에 들어오면 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함

노출기준	고용노 동부 (ppm)	30 200(STEL)	OSHA (ppm)	35 200(C)
	ACGIH (ppm)	25	NIOSH (ppm)	35 200(C)

동의어: Carbon Oxide, Carbonic Oxide, Monoxide

분석원리 및 적용성: 비분산적외선 혹은 전기화학적 센서 방식을 이용한 직독식 장비를 이용하여 측 정

시료채취 개요	분석 개요
■ 시료채취매체: 직독식 장비 ■ 펌프 흡입능력: 장비별 권장유량 적용 ■ 공기량: 장비별 권장공기량 적용 ■ 공시료: 신선한 공기나 CO-free air를 이용하여 영점 확인	 분석기술: 비분산적외선 방식 센서 혹은 전기 화학적 센서 분석대상물질: 일산화탄소 장비 측정범위 : 최소 0~100 ppm 포함 분해능 : 1 ppm 이하
방해작용 및 조치	정확도 및 정밀도
■ 다른 가스상 물질이 발생하여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비에 일산화탄소 전용 필터 착 용을 권장함.	■ 시료채취분석오차: 0.100

■ 일산화탄소 교정용 가스(20~50 ppm수준) ■	일산화탄소 직독식 장비직독식 장비 배터리 혹은 충전기

■ 특별 안전보건 예방조치: 일산화탄소는 가연성, 폭발성이 있으며 흡입 시 위험할 수 있음.



I. 시료채취 및 분석

- 1. 시료채취 전 작업장에서 깨끗한 공기나 제로 가스로 직독식 장비의 영점 조절을 한다.
- 2. 개인시료 측정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호흡영역에 장비를 설치하며, 지역시료 측정을 위해서는 작업 장소 부근 바닥에서 150~170 cm 높이에서 측정한다.
- 3. 측정시간 및 횟수는 작업시간 및 비교하고자 하는 노출기준에 따라 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택한다.

노출기준	측정 및 계산 방법
TWA	1) 1~2분 간격으로 작업시간 내내 연속측정·저장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균 계산 2) 등간격(예:1시간)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 후 평균 계산
STEL	3) 7~15분간 연속 측정(7~15회)하여 평균 계산

- ※ 6시간 이상의 작업 중 6시간만 측정하였다면 측정 외 시간을 적용·보정해야 함.
- ※ 장비 작동 후 1분 이상 안정화 시간 필요, 2회 평균값을 한 번 측정한 값으로 사용.

II. 장비 교정

- 4. 장비는 검교정 기관에 맡겨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거나, 장비회사에서 제안하는 일산화탄소와 공기 (혹은 질소)가 혼합된 가스실린더를 구매하여 교정한다(30 ppm을 포함시키는 전후 농도 2가지, 예: 20 ppm과 50 ppm).
- 5. 직접 교정할 경우 표준가스 농도의 ±5% 이내의 차이를 보여야 한다.

III. 비고

- 이 방법은 NIOSH Method 6604에 기초하였다.
- 건강영향 및 예방조치: 스팬가스를 이용한 장비교정 시 흄후드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

IV. 참고문헌

- 1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8호,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, 2020.
- 2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4호,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, 2020.
- 3.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(NIOSH): NMAM 5th edition 6604.
- 4.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 :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 ID-210
- 5.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(ACGIH): Documentation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, 7th Ed, 2019.
- 6. 노지원 등. 산안법 개정에 따른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: 1,2-디클로로프로판, 일산화탄소.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-834, 2020.